

## ◎기상청공고 제2024-73호

「예보업무규정」을 전부개정함에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05월 09일

기상청장

### 예보업무규정 전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

#### 1. 개정이유

예보와 특보를 분리하여 규정, 태풍예보 신설 등의 내용으로 「기상법」이 개정(법률 제19225호, 2024. 2. 15. 시행) 되고, 예보 및 특보 업무 전반을 상세하게 규정하는 「기상법 시행령」(대통령령 제34194호, 2024. 2. 15. 시행) 및 「기상법 시행규칙」(환경부령 제1079호, 2024. 2. 29. 시행)이 개정됨에 따라 예보와 해양기상예보를 분리하여 규정하고, 태풍예보, 특보 및 해양기상특보의 기준, 예비특보 및 해양기상예비특보에 관한 사항 등 상향 입법에 따른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,

단기예보 및 해양기상 단기예보의 예보대상기간을 4일에서 5일로 연장하고, 재난관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및 울산광역시 육상에 대한 특보의 대상구역을 세분화하며, 해양기상예보의 대상구역에 대한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#### 2. 주요내용

- 가. 기상현상에 대한 예보와 해양기상예보를 분리하여 규정하고, 예보별 생산 및 발표 방법, 세부 대상구역, 예보요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(안 제2장제2절 및 제4절).
- 나. 전라북도 행정구역 명칭 변경(전라북도→전북특별자치도)에 따른 육상광역예보의 대상구역 명칭에 반영함(안 제8조, 별표 1).
- 다. 단기예보 및 해양기상 단기예보의 예보대상기간을 4일에서 5일로 연장하고 중기예보의 예보대상기간을 조정함(안 제10조, 제11조, 제17조 및 제18조).
- 라.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의 발표방법, 위험단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(안 제12조).
- 마. 태풍예보의 대상구역 및 내용, 예비특보 및 해양기상예비특보에 관한 사항 등 「기상법 시행령」으로 상향 입법된 사항을 정비함(안 제13조 및 제22조).
- 바. 해양기상예보의 대상구역 중 앞바다 구역의 명확화, 행정구역 현행화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함(안 제16조, 별표 4 및 별표 7).
- 사. 해양기상특보 분리에 따른 생산·발표 등 관련 사항 반영과 「기상법 시행령」으로 상향 입법된 특보 및 해양기상특보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(안 제19조, 제21조 및 제22조).
- 아. 육상에 대한 특보의 세부 대상구역을 명확히 규정하고, 지역의 기상특성을 고려하여 부산·울산광역시 육상에 대한 특보의 대상구역을 세분화함(안 제20조, 별표 3).
- 자. 통보대상기관의 선정 및 관리, 특보의 통보 등 「기상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라 기상청장에게

위임한 사항을 신설함(안 제23조 및 제24조).

차. 태풍 위험 상세정보 생산·발표 근거 마련, 기상현상의 실황 및 추이를 알리기 위한 기상정보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함(안 제5장).

카. 사후분석을 유지·관리하기 위한 방법 등 「기상법 시행규칙」 개정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신설함(안 제36조).

### 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(참조: 예보정책과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보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개 정(안)	수 정(안)	수 정 사 유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: (07062)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, 기상청 예보정책과
- 전자우편: ksson@korea.kr
- 팩스: 02-647-4419

### 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예보정책과(전화:02-2181-0501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(<http://www.kma.go.kr>)의 주요업무→법령정보→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